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 정 2014.11.24.

개 정 2016.01.29

개 정 2016.09.23

개 정 2017.02.14

개 정 2020.11.12

목 차

총칙	8
I. 주주총회 일반	
1. 의결권 일반	10
1.1. 안건의 일괄 상정	
1.2. 주주제안 무력화	
1.3. 안건의 투표	
1.4. 결의권한 주체의 변경	
1.5. 주주총회 정족수	
2. 사업목적	10
2.1. 사업목적의 추가·변경	
II. 재무제표 및 배당	
3. 재무제표	11
3.1. 재무제표의 승인	
3.2. 재무제표 승인권한 주체	
4. 배당	11
4.1. 배당결의 주체의 변경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 4.2 배당금 지급
- 4.3 중간 또는 분기배당
- 4.4 현물배당

5. 외부감사 ----- 11

- 5.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Ⅲ. 이사회 및 위원회

6. 이사회 ----- 12

- 6.1. 이사회 규모 및 구성 변경
- 6.2. 고위경영자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 6.3. 선임사외이사와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임
- 6.4. 이사회 소집
- 6.5. 이사회 결의 방법 변경

7. 이사회 내 위원회 ----- 12

- 7.1.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8.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2

- 8.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9. 감사위원회 ----- 12

- 9.1. 감사위원회 설치

10. 보수위원회 -----	13
10.1. 보수위원회 설치	
11. 내부거래위원회 -----	13
11.1.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IV. 이사·감사·감사위원회 위원 및 성과·보상	
12. 사내이사 -----	14
12.1. 사내이사 후보 요건	
13. 사외이사 -----	14
13.1. 사외이사 후보 요건	
13.2. 사외이사 독립성 기준	
13.3. 사외이사 전문성 기준	
13.4. 사외이사 기타 기준	
13.5. 사외이사의 임기	
14. 집행임원 -----	15
14.1. 집행임원제도	
15. 이사 선임 -----	16
15.1. 후보의 일괄 상정	
15.2. 집중투표제	

16.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	16
16.1.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요건	
16.2.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출	
17. 이사·감사의 보수 및 성과 보상 -----	16
17.1. 이사의 보수 한도	
17.2. 보수 공시항목 확대	
17.3. 감사의 보수 한도	
17.4. 보상과 경영성과	
17.5. 성과 보상의 지급 기준	
17.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7.7. 사외이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7.8. 퇴직보상금	
17.9. 책임감경의 주주총회 승인	

V. 자본구조

18. 자본 증가 -----	18
18.1. 발행예정주식총수	
18.2. 주주의 신주인수권 제한	
19. 종류주식 -----	18
19.1. 종류주식 발행	

20. 자기주식 -----	19
20.1. 자기주식 처분의 제한	
21. 사채 -----	19
21.1. 특수 사채	
21.2. 주권관련사채의 우선매수권	
21.3. 발행 대상과 한도	
22. 주식분할·병합 -----	19
22.1. 비례적 주식분할·병합	
22.2. 차등감자	
23. 자본금 감소 -----	19
23.1. 자본금 감소	
VI. 인수합병 및 기업구조 재편	
24. 인수합병 -----	20
24.1. 인수합병	
24.2. 차입매수	
25. 분할 및 분할합병 -----	20
25.1. 분할 및 분할합병	

26. 지주회사 설립 -----	20
26.1. 지주회사 설립	
27. 영업양도·양수 -----	21
27.1. 영업양도·양수	
27.2. 영업양도·양수의 승인	
28. 상장폐지 -----	21
28.1. 자진 상장폐지	
28.2. 소속시장 변경	
29. 적대적 인수합병과 경영권 방어장치 -----	21
29.1.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전략	
29.2.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29.3. 위임장 대결	

VII. ESG

30. 지속가능경영 -----	23
30.1. 지속가능경영	

총 칙

제1조 (제정의 목적)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에 기여하고 주주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결권 행사의 기본 원칙)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에 따라 의결권 행사 기준을 정한다.

1.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주주 가치의 균형
2. 확실한 사실 기반
3. 국내 경영 환경 및 글로벌 트렌드 고려

제3조 (선관주의의무)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상정 안건의 정당성 및 결의 결과가 주주 가치, 기업 가치,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판단한다.

제4조 (의안분석 결과의 게시)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의안분석 보고서를 해당 기업의 주주총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게시일을 변경하거나 결과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5조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검토)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연 1회 정기 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제6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최대주주"란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 ② "특수관계인"이란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 ③ "주요주주"란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주요주주를 말한다.
- ④ "임원"이란 이사, 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 및 「상법」상 집행임원을 말한다.
- ⑤ "계열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I. 주주총회 일반

1. 의결권 일반

- 1.1. **(안건의 일괄 상정)** 주주총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 안건의 개별상정에 찬성하고, 일괄상정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되 안건 내의 개별 안건 모두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한다.
- 1.2. **(주주제안 무력화)** 주주제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회사의 안건 상정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반대한다.
- 1.3. **(안건의 투표)** 사안별로 검토하여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건에 찬성하고, 반대로 주주권익을 약화시키는 안건에 반대한다.
- 1.4. **(결의권한 주체의 변경)**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주주보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 반대한다.
- 1.5. **(주주총회 정족수)** 주주총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안건은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반대한다.

2. 사업목적

- 2.1. **(사업목적의 추가·변경)**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변경 안에 대해 기존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없거나 주주가치의 훼손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대한다.

II. 재무제표 및 배당

3. 재무제표

- 3.1. **(재무제표의 승인)**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 이외의 의견일 경우에는 재무제표 승인 안에 반대한다.
- 3.2. **(재무제표 승인권한 주체)** 재무제표의 승인을 이사회에서 하도록 하는 안건에 대해 반대한다.

4. 배당

- 4.1. **(배당결의 주체의 변경)** 배당 결의를 이사회에서 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 4.2. **(배당금 지급)**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기회, 동종업계 배당수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규모, 총주주수익률,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당금 지급수준이 과소 또는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 4.3. **(중간 또는 분기배당)** 중간 또는 분기배당을 허용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 4.4. **(현물배당)**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할 수 있는 안에 찬성한다. 다만, 현물의 시장성,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한다.

5. 외부감사

- 5.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해당회사 등이 외부 감사인 등으로부터 회계감사 이외에 다른 자문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는 안에 찬성한다. 다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Ⅲ. 이사회 및 위원회

6. 이사회

- 6.1. **(이사회 규모 및 구성 변경)**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이 제한되거나 개별이사의 영향력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는 이사회 규모 및 구성 변경 안에 반대한다.
- 6.2. **(고위경영자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고위 경영자(CEO, CFO, CTO, COO 등)와 이사회 의장의 직책을 분리하는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 6.3. **(선임사외이사와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임)** ① 고위경영자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경우 선임 사외이사를 도입하는 안에 찬성한다. ②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 6.4. **(이사회 소집)** 이사회 소집 통보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나치게 단축하거나 단축의 사유가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합리적이지 못 할 경우 반대한다.
- 6.5. **(이사회 결의 방법 변경)**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결의 방법을 변경하는 안에 반대한다.

7. 이사회 내 위원회

- 7.1.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가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찬성한다.

8.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8.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찬성한다.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9. 감사위원회

- 9.1. **(감사위원회 설치)**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찬성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상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의결권행사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대한다.

10. 보수위원회

- 10.1. **(보수위원회 설치)** 이사보수 결정 과정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회 내에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11. 내부거래위원회

- 11.1.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 등과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이사회 내에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IV. 이사 · 감사 · 감사위원회 위원 및 성과 · 보상

12. 사내이사

12.1. **(사내이사 후보 요건)**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내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 횡령, 배임 등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현저한 기업가치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주주 전체의 이익이 아닌 특정 주주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경우
-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 분식회계의 책임이 있는 경우
- 기타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거나 침해의 우려가 명백히 있는 경우

13. 사외이사

13.1. **(사외이사 후보 요건)**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검토시 다음의 '독립성, 전문성, 기타 기준'을 검토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13.2. **(사외이사 독립성 기준)**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 해당 회사, 계열회사, 기업총수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이하 '해당회사 등'이라 한다)의 상근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회사 등의 상근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자.
-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임직원
-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법률·경영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이해관계 있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사람
- 해당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한 경우.
- 금융회사 사외이사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임하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계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임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경우.

13.3. **(사외이사 전문성 기준)**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 전문경영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10년이상 동종 업계에 종사한 자
-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인정한 자

13.4. **(사외이사 기타 기준)**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 사내이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임기평균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이 75% 이하인 경우
- 해당 회사 외에 2개 이상의 회사에서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직 중인 경우
-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 외의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 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경우
- 기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3.5. **(사외이사의 임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외이사의 임기를 단축 또는 연장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안에 반대한다.

14. 집행임원

14.1. **(집행임원제도)** 이사회의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그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는 안에 찬성한다.

15. 이사 선임

- 15.1. **(후보의 일괄 상정)** 후보의 일괄상정에 대해서는 '1.1. 안건의 일괄 상정' 조항을 준용한다.
- 15.2. **(집중투표제)**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안건에 반대하고,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삭제하는 안건에 찬성한다.

16.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 16.1.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요건)** 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가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독립성 또는 전문성의 한계가 있는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임에 반대한다.
- 사외이사의 선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이 재직하는 동안 외부감사인에게 지급한 용역 보수 중 회계감사 이외의 다른 경영 컨설팅 비용 등 과도한 비감사 용역 보수로 인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이 재직하는 동안 법령 또는 행정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감사 또는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6.1. 사외이사 후보 요건'을 준용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 16.2.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부호를 다른 이사 후보들과 분리하여 선출함으로써 선임단계에서부터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하는 안건에 대해 찬성한다.

17. 이사·감사의 보수 및 성과 보상

- 17.1. **(이사의 보수 한도)** 이사의 보수 한도가 과다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가 제시한 안에 찬성한다. 다만,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대할 수 있다.
- 이사의 보수 한도 수준이 경영 성과 및 기업규모 대비 과다한 경우
 - 업종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전기의 보수 실지급률이 보수 한도에 크게 미달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 한도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 총주주수익률이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 한도를 인상하는 경우
 - 이사회 내 이사 인원수의 변동에 따른 보수 한도 수준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 구조조정 진행 중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수 한도를 인상하는 경우
- 17.2. **(보수 공시항목 확대)** 임원 보수에 관한 공시항목을 보수 한도, 내역, 책정기준 등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 17.3. **(감사의 보수 한도)** 감사의 보수 한도 안에 대해서는 감사 인원의 증감, 전기 보수 실지급률, 실지급액, 다른 임·직원 평균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정도로 과소하거나 과다하지 않은 경우 찬성한다.
- 17.4. **(보상과 경영성과)** 성과에 연동하지 않는 경영진과 임원의 보상에 반대한다. 단, 신규 임원의 경우 사안별로 판단한다.
- 17.5. **(성과 보상의 지급 기준)** 임원에 대한 성과 연동형 보상 안에 대해서는 동종 업계, 시장 상황 등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한다.
- 17.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반대한다.
- 총발행주식수 대비 과도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요건의 경영성과 연계 배제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요건의 시장요인 영향 배제
 -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 유보기간을 단축
- 17.7. **(사외이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사외이사들에게 보상의 일부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 전에 매도 또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 17.8. **(퇴직보상금)** ① 이사 및 임원에게 퇴직보상금을 지급할 때 재직 중 경영실적, 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은 경우 찬성한다.
- ② 퇴직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반대한다.
- 17.9. **(책임감경의 주주총회 승인)** 이사 등의 책임감경은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안에 찬성 한다.

V. 자본구조

18. 자본 증가

18.1. **(발행예정주식총수)**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경우에 찬성한다.

-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비하려는 목적인 경우
- 구조조정 및 재무개선을 위한 경우 또는 상장폐지 등 경영상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증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8.2. **(주주의 신주인수권 제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는 안은 반대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여 공정한 절차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찬성할 수 있다.

-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여야 할 정도로 시급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방식으로는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 발행수량의 규모, 발행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기존주주의 주식가치 및 회사의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19. 종류주식

19.1. **(종류주식 발행)** 회사의 자금 조달 방식의 다양화를 꾀하는 동시에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발행은 찬성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 반대한다.

- 특정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서 종류주식 발행. 다만, 주주가치의 훼손 우려가 예상되는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고 기존 지배주주의 지배권 유지가 일반 주주 또는 회사의 이익에 부합되거나 사회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한다.
- 의결권 배제·제한 주식에서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종류주식의 경우에는 전환으로 인해 다른 주주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희석하여 경영권 방어의 목적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20. 자기주식

20.1. **(자기주식 처분의 제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반대한다

21. 사채

21.1. **(특수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권관련사채와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이익참가부사채는 명칭 여하 불문하고 사채 발행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반대한다.

21.2. **(주권관련사채의 우선매수권)** ① 주권관련사채 발행 후 일정 기간 경과 후에 특정 주주 또는 제3자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 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대한다. ② 특정 주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주권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18.2. (주주의 신주인수권 제한)'을 준용한다.

21.3. **(발행 대상과 한도)** 사채의 발행 대상과 한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하는 안에 반대한다.

22. 주식분할 · 병합

22.1. **(비례적 주식분할·병합)**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비례적으로 발행주식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한다.

22.2. **(차등감자)** 발행주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주식병합 안에 대하여는 대주주가 경영 부실의 책임을 지기 위해 이에 동의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찬성한다.

23. 자본금 감소

23.1. **(자본금 감소)** 자본금 감소의 안에 대해 반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찬성할 수 있다.

- 기업 회생, 구조조정 절차 등의 일환으로 자본금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후 주주가치에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불가피한 경우
-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다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없이 반복적으로 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 경영진의 경영부실 책임을 묻기 위한 차등 자본금 감소의 경우
- 자본금 적정화와 주주가치 환원을 위한 유상 감자의 경우
-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자본금 감소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VI. 인수합병 및 기업구조 재편

24. 인수합병

24.1. **(인수합병)** 인수합병 안건은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반대한다.

- 특정인의 사적 이익 추구 여부
- 회사의 전망과 향후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
- 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과 배치 여부
- 인수 가격과 비율, 절차의 공정성 및 정보공개의 적정성
- 시장 반응과 사회적 영향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 등 기타 불공정 행위 개입 여부

24.2. **(차입매수)** 차입매수 또는 그와 유사한 방식에 의한 인수합병은 법률적 타당성, 적격요건 충족여부, 가치평가, 이해상충,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검토 한다.

25. 분할 및 분할합병

25.1. **(분할 및 분할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안건은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반대한다.

- 특정인의 사적 이익 추구 여부
- 분할 비율, 절차의 공정성 및 정보공개의 적정성
- 잔존 회사의 사업 지속성, 성장성, 수익성
- 분할신설 및 분할합병회사의 사업 지속성, 성장성, 수익성
- 주주의 지위 및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 등 기타 불공정 행위 개입 여부

26. 지주회사 설립

26.1. **(지주회사 설립)**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지주회사 설립이나 전환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사안별로 검토할 수 있다.

27. 영업양도 · 양수

- 27.1. **(영업양도·양수)**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중요한 영업양도·양수에 반대한다
- 27.2. **(영업양도·양수의 승인)** 상법 제37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양도·양수의 경우에도 주주총회 승인으로 하는 안에 찬성한다.

28. 상장폐지

- 28.1. **(자진 상장폐지)** 자진 상장폐지를 결의하는 안에 대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대한다.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 소액주주 보호절차가 미흡한 경우
 - 자진 상장폐지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
 - 불합리한 공개매수 가격, 주식교환가격으로 인해 주주에게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8.2. **(소속시장 변경)** 변경하고자 하는 소속시장의 인지도, 이전 상장의 상대적 장점 등을 검토하여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찬성한다.

29. 적대적 인수합병과 경영권 방어장치

- 29.1.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전략)** 주주가치에 우선하여 기존의 경영권 유지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전략을 도입하는 안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대한다.
- 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주요 자산의 매각
 -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 투자, 초과배당 등 회사의 보유 현금을 줄임으로써 인수합병의 매력을 낮추는 자본재구축 전략
 -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시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종류주식의 발행
 - 대표이사 또는 이사들의 비자발적 퇴직 시 과도한 규모의 퇴직보상 계약
 - 경영권 방어 목적의 시차임기제 도입
 - 이사 해임 시 초다수결의제 도입
- 29.2.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서는 필요성, 적합성, 목적과 수단간의 비례성 요건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검토한다.
- 29.3. **(위임장 대결)** 위임장 대결 시 다음 요인들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우려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는 경우 반대한다.

- 현 회사와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회사간의 과거 기업 실적 비교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회사의 이사회가 취한 조치
- 주주제안에 대한 현 회사의 대응
- 현 회사와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회사의 기업개선이나 기업 지배전략상의 차이
-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회사에 대한 찬성 투표가 이사회 독립성과 다양성에 미칠 영향
- 이사 후보의 경험과 능력
- 현 경영자의 경영고착화 정도
- 기업의 인수방어전략의 적정성 등

VII. ESG

30. 지속가능경영

- 30.1. **(지속가능경영)**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한 안건에 대해서는 주주가치, 책임투자 타당성, 수탁자책임 활동 및 기타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한다.

[Compliance Notice]

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자료는 대신지배구조연구소에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신뢰할만한 자료와 정보를 사용하여 작성한 자료로 주주의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의 편의를 위하여 단순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 본 자료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강제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를 참조하여 실행한 주주총회의 결의 결과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본 자료를 어느 주주총회와 관련한 분쟁에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라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